

#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제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'92. 10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제안사유

- 소방법 개정(법률 제4419호, '91. 12. 14)으로 소방사무가 시·군 책임에서 시·도의 광역 자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시·군별 화재예방조례는 폐지되고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불을 사용하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, 구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: 보일러, 난로등 19개 설비, 기구(제2조-제20조)
- 불의 사용에 관한 제한 : 흡연, 분화, 이상기상등(제21조-제24조)
- 주택 난방용, 농예용, 양식장의 난방용, 임시저장 및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(제25조-제31조)
- 다중집합 장소등의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관리 기준 : 공연장, 유흥음식점등(제32조-제38조)
- 화재로 오인되는 연기발생시 신고 의무(제39조)
-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(제41조)
- 시정촉구 및 과태료 부과기준 : 20만원이하(제40조, 제43조)

## 의안내용

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제정

##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소방법 제13조, 제14조제2항, 제15조제2항, 제17조제1항, 제27조, 제67조제3항, 제119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